

알레르기 접촉피부염



김 정 원

머리 염색을 한 후
두피나 얼굴에
가려움증, 습진성
피부염이 발생하거나
옷이 오르는 것 등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다.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은 피부에 접촉된 물질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머리 염색을 하고나면 두피나 얼굴에 가려움증이나 습진성의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옷나무에 접촉 후 옷이 오르는 것도 이 범주에 들어 간다.

그러나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 이외에 접촉된 물질에 의한 자극반응도 있어 알레르기 접촉피부염과 단순한 자극피부염은 감별을 하여야 한다.

그외에 알레르기 광접촉피부염이 있는데 이는 어떤 물질이 피부에 접촉하였을 때 아무 반응이 없던 사람도 햇빛에 노출되고 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화장품을 바르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던 사람이 햇빛에 노출되고 나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광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때 알레르기 접촉피부염과 광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법으로 피부침포검사나 광피부침포검사를 하여 피부반응 유무를 확인한다.

이러한 광선에 의한 피부반응에

도 알레르기 반응과 광독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광알레르기 접촉피부반응은 과민 반응으로 감각된 사람에서만 나타나는 특이 반응인데 반해 광독반응은 특이 반응이 아니므로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는데, 이러한 알레르겐은 분자량이 작은 단순화합물로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 피부단백과 결합하여 완전 알레르겐이 되고 이 알레르겐은 피부의 제일 표면층인 상피내의 랑겔한스 세포에

광알레르기 반응의 진단 시에는 환자가 선천적으로 광선에 예민한지, 광선알레르기나 광독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나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지. 선천적이나 후천적 대사이상 질환이 있어 광선에 반응을 일으키는지 또는 광선에 예민한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지도 확인한 후에 진단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1. 알레르기 접촉피부염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은 면역학적으로 과민성 피부반응으로, 접촉된 물질에 감각된 사람에서만 증상이 나타나는 특이 반응이다. 예컨대 머리염색약을 사용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 염색약이 조금만 피부에 닿아도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감각 반응에서 머리 염색약을 알레르겐 또는 항원이라고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은, 과민성 피부반응으로, 접촉된 물질에 감각된 사람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특이 반응이다.

탐식되어 그 정보를 면역세포인 T 임파구에 전달하여 감각 상태를 유발하게 된다.

일단 감각된 상태에서 동일한 물질이나 비슷한 알레르겐 구조를 가진 물질이 재차 피부에 접하게 되면 접촉한 부위에 피부염, 습진, 물집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가려움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정도는 알레르겐의 종류나 개체의 감각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은 알레르겐에 접촉된 후 48시간 후에 증상이 나타나므로 지연과민반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물론 알레르겐에 따라 증상의 발현 시간이 보다 짧을 수도 있다.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옷나무에 접촉한 사람이 당시는 약간 가려움증만 있다가 시간이 지나 차차 심해지면서 3~

4일이 되면 증상이 최고조에 달함을 경험할 수 있다.

2. 자극 접촉피부염

자극접촉피부염은 알레르기 접촉피부염과 달리 특이성이 없어 자극물질의 자극성 정도에 따라 접촉 후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강한 산이나 알카리 등 자극 정도가 강한 것은 접촉한 즉시 누구에게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자극 정도가 낮은 세제 등은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 만성적으로 피부에 자극을 주어 증상이 늦게 나타남을 경험하게 되고, 피부의 상태에 따라 또는 노출 횟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역시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비 특이적 반응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극피부염 중에도 자극 물질에 따라 알레르겐으로 작용하는 물질도 있다. 자극피부염과 알레르기피부염과의 감별이 육안으로 힘들 경우가 있어, 임상적으로는 접촉피부염이라 칭하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시행한 후 결과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인 경우 알레르기 접촉피부염, 그렇지 않을 경우 자극 접촉피부염이라 부르고 있으



시계, 이미테이션 장신구 등에 접촉한 후 가려움증, 구진, 수포등이 발생할 수 있다.

선정된 피부에 바르거나 밀폐시킨 후 48시간 후에 떼어 1~2시간 후에 피부반응 유무를 확인하고 재차 48시간 후에 다시 확인하여 양성반응 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알레르기 반응은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나 자극반응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 정도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화장품과 같이 의심되는 원인물질의 농도가 낮은 제제로 직접 피부반응 검사를 할 때는 72시간 동안 밀폐시킨 후 반응유무를 확인할 때도 있다. 이러한 방법상의 변형은 시술자의 임상 경험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4. 임상예

가. 장신구에 의한 접촉피부염

메끼한 안경테, 시계, 이미테이션 귀걸이나 목걸이, 브레이저나 거들의 크립 등에 접촉한 후 가려움증이나 구진, 수포가 발생할 수 있는

나 양자간의 감별이 쉽지는 않다.

3. 피부반응검사(피부첨포검사)

원인 물질이라고 의심이 되는 물질을 적당한 농도로 희석한 후 등이나 기타

데 땀이 나는 계절에 흔하다.

나. 의복에 의한 접촉피부염

나일론이나 포르마린 수지를 입힌 자연섬유, 염료 등에 의해 접촉된 피부에 습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도 땀이



시행하고 또 화장품에 포함된 물질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여 어떤 물질이 원인인지 찾아내어 화장품의 선택을 도와 주어야 한다. 특히 얼굴은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이므로 광알레르기 접촉

나는 계절이나 땀이 차는 부위에 흔히 발생한다.

첨가된 원인물질로 만든 알레르겐 시약으로 피부반응 검사를 할 수 있으나, 피부병이 발생한 부위와 접한 천을 잘라 피부반응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때 옷을 빨아서 사용하면 안된다.

다. 주부습진

세제를 자주 사용하는 주부의 손에 습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세제에 의한 자극 또는 알레르기 반응도 나타날 수 있으나 고무장갑을 사용할 경우 고무장갑에 의한 반응도 감안하여야 한다.

기타 건조피부를 갖고 있거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사람에서 손에 습진이 올 수 있으므로 타 질환의 합병유무도 확인하여야 한다.

라. 화장품에 의한 접촉피부염

화장품을 사용한 후 얼굴이 가렵거나 발진이 발생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화장품으로 피부반응 검사를

세제를 자주 사용하는 주부의 손에 습진이 발생하거나, 고무장갑에 의한 접촉 피부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반응이 있는지 유무도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장품에 의한 반응중에 착색현상이 있어 기미같은 임상증상도 보일 수 있다.

마. 옷나무에 의한 접촉피부염

옷나무에 접촉한 후 옷이 오르다고 하는데 이도 접촉피부염이다. 대부분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이 많다. 이러한 사람은 옷칠한 가구에 접하여도 접촉부위에 습진이 발생할 수 있고 옷담을 다려먹은 후 전신적인 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바. 외용제에 의한 접촉피부염

연고제나 소독제를 바른 후 그 부위에 소양증과 더불어 구진이나 수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피부병이 있어 외용제를 사용한 후 증상이 악화되거나 예견되는 날자에 낫지 않으면 사용한 약제에 의한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이나 자극접촉피부염을 의심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72

<필자=강남성모병원 피부과>